부정 청탁 - 알선 방지 실천 강화방안

I 목 적

- 부정 청탁·알선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고,
- 청탁 미신고자가 비위행위에 관련되었을 경우 엄중 조치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
- 청탁 작용요인을 방지하고 청탁등록을 생활화하여 자율적 윤리준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

〈관련 근거〉
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8조(공직자 행동강령)
 -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·이권개입·알선·청탁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행동강령에 정하도록 함
- 공직자 윤리법 제18조의4(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)
 - 재직자 : 부정 청탁·알선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
 - * 신고로 인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 차별 금지
 - 퇴직자 : 퇴직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 위반, 직권남용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·알선 금지
 - * 위반시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- 국민권익위원회「청탁행위 대응매뉴얼」
 - [청탁 등록자 관리]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거부로 간주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청탁 관련 문제발생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
 - [청탁 관련자 관리] 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
 - 부당한 청탁사항을 등록하지도 않고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자 포함
- ※ 2013년도 중「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」제정 예정

Ⅱ 주요내용

- □ 부정 청탁·알선 금지 및 신고(임직원 행동강령, '12.10월 개정)
 - 부정 청탁·알선 등의 금지, 신고의무, 범위 및 처리방법, 퇴직 임직원의 재직자에 대한 청탁행위 금지 등 명시
- □ 신고자 보호(임직원 행동강령, 내부신고자 보호지침)
 - O (현행)신분보장 : 신고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, 인사·징계 등 불이익 처분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
 - O (현행)책임의 감경 : 신고로 인한 자신의 부패행위 발견시 징계처분 감경 또는 면제
 - (신설)부정 청탁·알선을 등록한 임직원 보호
 -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

부정 청탁·알선 내용을 등록한 임직원은 청탁거부로 간주, 업무수행과정의 공정성을 인정하여 청탁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제

- ※ 권익위「청탁행위 대응매뉴얼」中 청탁 등록자 관리
 - 청탁등록한 공직자는 청탁거부로 간주, 업무수행과정의 공정성을 기본적 으로 인정, 문제발생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임직원 보호조치 강구
 - 청탁등록한 임직원이 해당 업무참여로 인해 공정성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임직원의 업무배제 등 필요조치 강구
 - <고려요인>•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자와의 연고 등 인적관계 정도
 - •담당 공직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재량권 행사 정도 및 업무의 중요도
 - •청탁자의 의도대로 업무 해결시 예상되는 상호간의 금전적 이해관계
 - •담당 공직자의 과거 비위관련 경력 등

- □ 위반행위시 조치(임직원 행동강령, '13.7월 개정)
 - O (현행)행동강령 위반시 징계 등 조치,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가중 징계
 - O (개정중)중요 비위행위 적발시 '해임'이상 중징계 처분
 - 직무관련 금품·향응 수수(10만원 이상), 부정 청탁·알선행위로 사익추구, 직무관련 정보이용 사익 추구
 - (신설)청탁 미신고자가 비위행위 관련되었을 경우 엄중 조치
 - 비위행위 미신고 관련자 엄중조치를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 제공

부당한 청탁사항을 등록하지도 않고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여 청탁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미신고 관련자 엄중 조치

- ※ 권익위「청탁행위 대응매뉴얼」中 청탁 관련자 관리
 - 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
 - 부당한 업무처리 강요, 제3자를 통한 본인의 인사 청탁을 하는 자,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·청탁을 하는자
 - 부당한 청탁사항을 등록하지도 않고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자

□ 부정 청탁·알선 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

- O 청탁신문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: '13. 7월말까지
 - 그간 인지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항, 청탁 거절사례
 - 계약·구매, 공사·하도급 등 업무별 청탁·알선유형 안내 ('12년 51개 → '13년 65개)
- O 부정 청탁·알선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·전파
 - 구체적 대응방향, 단계별 청탁 대응 요령, Q&A 등